

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등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결정으로 사업주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에 의거하여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명령 등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문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, “사업장소재지 불명”하여 송달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17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**장**



1. 건 명 :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,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및 보조금 지급 제한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사업자등록번호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 불능 사유
(주)나누리 로지스틱스	315-87-*****	서울 강남구 선릉로 92길 ***(삼성동), 4층 42**호	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등 사전통지	<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처분내용 사전통보> -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정부보조금 반환명령 8,776,000원 - 제재부가금 43,880,000원 부과 - 지급제한기간:반환명령일로부터 5년간 지급제한	사업장 소재지 불분명

4. 공고기간 : 2026. 6. 17. ~ 2026. 7. 1.(15일간)

5.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이진희(Tel 02-580-491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